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다.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인증 당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다. 표시방법

● **절수등급 : 1등급**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리터/회)	4이하	5이하	6이하

- 1) 배색 비율은 녹색(C70+M5+Y100+K5)으로 한다.
-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